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법제처의 정원 1명(7급 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7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제처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21”로, 행정사무관 “86”을 “85”로 한다.

총리령 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80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6월 17일까지”를 “2027년 6월 17일까지”로, “2024년 6월 18일 이후”를 “2027년 6월 18일 이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80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총리령 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80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은 <u>2024년 6월 17일까지</u> 존속하며, <u>2024년 6월 18일 이후</u>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2027년 6월 17일까지</u> ----- <u>2027년 6월 18일 이후</u>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20</u>	· <u>21</u>	+1
· · 행정사무관	· <u>86</u>	· <u>85</u>	-1
· ·	· ·	· ·	